

Contents

국가회계 동향

재정통계 동향

오피니언

센터 동향

회의 및 세미나

공지사항

01

국가회계 동향

1 국가회계 국내동향

가. 국가회계제도 개선 T/F 운영

기획재정부 재무회계팀과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국가회계제도 개선을 위한 ‘국가회계제도 개선 T/F(이하 ‘T/F’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다. 본 T/F는 2014년 국가회계 체계 개편의 후속 작업으로 2015년부터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국가회계제도를 ‘법령·예규’와 ‘결산보고서’로 구분하여,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검토·논의하고 이러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요성과 시급성에 따라 국가회계기준과 예규, 결산보고서의 순차적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6년은 국가회계전문가 및 결산담당자 등 실무자가 건의한 과제를 검토하여 자산재평가 회계처리 개선 등 ‘법령·예규’ 6건, 연금보고서 표준화 등 ‘결산보고서’ 2건이 연내 개선과제로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3차 T/F까지 진행이 완료되었다. 논의가 완료된 과제는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소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차후에 개최될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나.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소위원회 개최

국가회계제도 개선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한 소위원회가 8월 26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PEMNA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2016년 첫 소위원회에서는 기획재정부 우병렬 심의관의 주재로 민간전문위원 6인(김경호 교수 외)이 참석하여 총 5개의 안건을 논의하였다. 추가 안건 검토 및 의결안 수정을 위하여 향후 2차례 이상 소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소위원회 심의 결과가 반영된 안건은 차후에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국가회계제도 개선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개회일	구 분	안 건
〈1차〉 8월26일	보고안건	’15회계연도 재무결산 추진결과 보고 국가회계예규 등 국가회계제도 개선계획(안) 보고
	심의안건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부령)」 일부 개정(안) 「우발상황 회계처리지침(예규)」 일부 개정(안)
	논의안건	자산재평가 회계처리 개선안

다. 2016회계연도 재무결산 중간점검 설명회 개최

기획재정부는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와 함께 2016회계연도 재무결산을 대비하여, 내부거래 사전 제거 및 건설중인자산 적정성 검토 등 계정별 회계처리 적정성 여부 사전 점검을 위한 중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중간점검에서는 내부거래 제거, 건설중인자산 적정성 검토, 계약전 부대비 지출 적정성 검토 등 5개의 항목을 각 부처에서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중간점검은 2016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회계처리를 대상으로 하며, 각 회계·기금별로 자체점검보고서를 10월 19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다. 단, 디브레인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디브레인 연계기관)들은 10월 19일까지 내부거래 대상 자료를 디브레인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자체점검을 수행하게 된다.

기획재정부와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중간점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9월 27일(화)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설명회에서는 중간점검 항목에 대한 점검 방법 안내뿐 아니라 2015년 감사원 지적사항을 포함한 재무결산 연례적 지적사례에 대한 설명도 함께 진행하였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는 각 부처가 제출한 자체점검보고서를 취합, 분석하여 부처별 점검 실적을 확인하고, 점검 실적이 미흡한 부처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자체 보고회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라. 2016년도 국가회계전문교육 운영

기획재정부는 회계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통한 발생주의·복식주의 회계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정착을 위하여 2009년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 이후 2010년부터 매년 국가회계전문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2016년도는 6월 22일부터 11월까지 14회에 걸쳐 서울(6회), 대전(6회), 부산(2회) 지역에서 전 부처, 회계 공무원 등 3,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국가회계전문교육은 ‘회계이론 및 실무과정’과 ‘재무결산과정’으로 구분되며, 회계이론 및 실무 과정은 신규 회계공무원, 일반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재무회계의 기본 개념과 복식부기 등 회계 업무 마인드 확산을 목표로 회계원리와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내용들을 다루도록 하였고, 재무결산과정은 중앙관서 재무결산담당자를 대상으로 재무결산절차 및 유의사항을 교육함으로써

결산에 대한 전문성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공무원들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역별 순회교육과 사이버 교육도 병행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금년 회계교육부터는 각 부처의 회계·기금 결산담당자와 실·국별 회계, 결산 총괄담당자를 필수교육대상으로 지정하여 재무회계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 역량을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며, 지난해 교육결과를 바탕으로 보편적인 이론중심교육보다는 수요자들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필수교육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였다. 이를 위하여 교육수료자 대상의 만족도 조사를 기초로 우수한 강사 배정 및 교육내용을 구성하고, 회계이론 및 실무과정의 교육기간을 5일에서 3일로 줄이는 대신 교육 횟수를 7회(작년)에서 12회(올해)로 비중을 늘리는 등 개선이 이루어졌다.

국가회계전문교육은 9월까지 총 10회의 회계이론 및 실무과정이 완료되었으며, 10월 회계이론 및 실무과정(2회)과 11월 재무결산과정(2회)이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2016회계연도 재무결산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일선관서 회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주요 12개 도시(세종, 서울, 강원, 경북, 인천, 대구, 경기, 전북, 경남, 광주전남, 부산, 제주)에서 2016년 11월 17일부터 2016년 12월 2일까지 지역별 순회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2 국가회계 해외동향

가. 국제공공부문의회계기준위원회(IPSASB)¹⁾ 동향

① ‘재평가 자산의 손상’ 관련 개정사항 발표

국제공공부문의회계기준위원회(IPSASB)는 ‘IPSAS 21 비현금창출자산의 손상’과 ‘IPSAS 26 현금창출자산의 손상’의 개정사항인 ‘재평가 자산의 손상’을 발행하였다.

‘재평가 자산의 손상’은 이용자에게 재평가 모형을 적용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손상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개별 자산이나 ‘IPSAS 17 유형자산’에 따른 유형자산 분류에 속하는 자산집단에 대해 손상이 발생하였더라도 손상된 자산 또는 자산집단이 속하는 분류 전체에 대해 재평가할 필요가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1) IPSASB: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Board(국제공공부문의회계기준)

이번 개정사항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출처) <http://www.ifac.org/news-events/2016-07/ipsasb-issues-impairment-revalued-assets>

② ‘공공부문의 특정 금융상품’ 자문보고서 발표

2016년 7월 19일 IPSASB는 의견수렴을 위해 자문보고서(Consultation Paper) ‘공공부문의 특정 금융상품’을 발표했다.

자문보고서는 ‘공공부문의 특정 금융상품’이라고 불리는 여러 화폐 항목(monetary item)에 관한 다음의 세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다.

- (1) 유통통화(Currency in Circulation): 자문보고서는 유통통화에 대한 검토 시 공공부문 실체의 일반목적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이하 ‘개념체계’)의 부채와 수익의 정의를 참고하고 있다. 가장 주된 이슈는 통화 발행이 현재의무를 발생시키는지 여부로, 이에 대해 부채를 인식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수익을 인식하는 두 개의 회계처리(안)이 제시되었다.
- (2) 화폐용 금(Monetary Gold): 자문보고서는 어떠한 특징을 가진 금 자산이 화폐용 금의 정의(안)를 충족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자산의 최초 측정과 후속 측정을 위한 적절한 측정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화폐용 금에 대해서는 두 개의 회계처리 방안이 제안되었는데 이들은 각각 해당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통화당국의 의도와 연관된다.
 - 회계처리 1안 - 통화당국이 금을 국제유동시장(global liquid markets)에서 거래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시장가치로 측정
 - 회계처리 2안 - 통화당국이 경제안정을 목적으로 부정기적 기간에 걸쳐 금을 보유하는 경우 역사적 원가로 측정
- (3) IMF 할당 출자금(Quota Subscription) 및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s): 자문보고서는 개념체계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IMF 할당 출자금과 특별인출권(보유), 특별인출권(할당)의 적절한 인식과 측정에 관한 IPSASB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IPSASB는 공공부문의 특정 금융상품에 관한 재무보고가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정보 이용자들이 정부 재정에 대한 이들 금융상품의 영향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http://www.ifac.org/news-events/2016-07/ipsasb-publishes-consultation-paper-public-sector-specific-financial-instruments>

③ ‘IPSAS 39 종업원급여’의 발표

IPSASB는 ‘IPSAS 25 종업원급여’를 대체하는 기준서인 ‘IPSAS 39 종업원급여’를 발표하였다.

IPSAS 39와 IPSAS 25의 주요 차이는 다음과 같다.

- (1) 회계실체가 순확정급여부채 증감액의 인식을 이연(일명 ‘범위접근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선택권을 삭제
- (2) 확정급여제도에 대한 순이자접근법의 도입
- (3) 확정급여제도 및 복수사용자제도에 대한 특정 공시 요구사항의 개정
- (4) 확정급여제도에 대한 종업원 또는 제3자의 기여금이 근무용역과 연계된 단순 기여제도에 적용되는 조건의 단순화
- (5) 혼합형 사회보장제도²⁾(Composite Social Security Programs) 관련 규정 삭제

위 개정사항 중 (1)~(4)는 IPSASB가 IPSAS와 대응되는 기준서인 ‘IAS³⁾ 19 종업원급여’에 대해 2015년 12월까지 개정된 사항을 반영한 결과이며, 개정사항 (5) 혼합형 사회보장제도 관련 규정삭제는 실무적으로 불필요하다는 IPSASB의 결정을 반영한 결과이다.

이 기준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 예정이며 조기 적용이 권장된다.

(출처) <http://www.ifac.org/news-events/2016-07/ipsasb-publishes-ipsas-39-employee-benefits>

2) 혼합형 사회보장제도는 법에 의해 설치된 제도로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복수사용자제도 형태로 운영되며 근무용역 제공의 대가를 고려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출처: IPSAS 25 종업원급여)

3) IAS: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국제회계기준)

나. 미국 연방회계기준자문위원회(FASAB⁴) 및 주·지방정부 회계기준위원회(GASB⁵) 동향

① 연방재무회계기준 50(일반유형자산의 기초잔액 설정) 발표

미국 연방회계기준 자문위원회(FASAB)은 2016년 8월 4일 ‘SFFAS⁶ 50 일반유형자산의 기초 잔액 설정: SFFAS 6, SFFAS 10, SFFAS 23의 개정 및 SFFAS 35의 폐지’를 발표하였다.

이 기준은 특정 조건하에서 일반유형자산의 기초 잔액 설정 시 **대체적인 방법을 허용**하는 실무 적용지침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SFFAS 6 유형자산 회계’, ‘SFFAS 10 내부 사용 소프트웨어 회계’ ‘SFFAS 23 국방 유형자산의 제거’는 개정되고, ‘SFFAS 35 일반유형자산의 역사적원가 추정: SFFAS 6 및 23의 개정’은 폐지되었다.

대체적인 방법은 최초 또는 현재 시스템이 대체적인 방법의 적용 없이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GAAP)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 이후에 허용된다. 이 경우, 두 번째 조건은 각 보고 실체마다 품목별로 한 번만 적용 가능하다.

대체적인 방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유형자산의 기초 잔액 설정시 **간주원가 사용이 가능하다**. 간주원가는 최초 취득원가의 대용치로 사용되는 금액으로서 다음의 평가 방법 중 하나 또는 이들의 조합에 기초하여 결정한다.

- (1) 대체원가: 보고 시점에 현재 자산의 남아있는 잠재적 서비스를 대체하기 위한 금액 (사용종료 시점에 자산 처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포함)
- (2) 추정 역사적 원가:
 - 1) 취득 시점의 유사한 자산의 원가
 - 2) 취득 이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할인한 유사한 자산의 현재 원가
 - 3) 기타 합리적인 방법
- (3) 공정가치: 강제 또는 청산 판매를 제외하고, 독립된 거래 당사자 사이에 교환될 수 있는 금액

둘째, 내부사용 소프트웨어의 기초 잔액은 다음의 대체적 방법 중 하나 또는 이들의 조합에 기초하여 결정한다.

4) FASAB: Federal Accounting Standards Advisory Board(미국 연방회계기준자문위원회)
 5) GASB: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Board(미국 주·지방정부 회계기준위원회)
 6) SFFAS: Statements of Federal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미국 연방재무회계기준)

(1) 간주원가

(2) 전진적 자본화

- 1) 모든 내부사용 소프트웨어를 기초 잔액에서 제외(기초 시점에서 개발 중인 것 포함)
- 2) 기초 시점에서 개발 중인 내부사용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금액을 기초 잔액에 포함하고, 이용 중인 내부사용 소프트웨어는 기초 잔액에서 제외

셋째, 토지와 토지 사용권의 기초 잔액은 다음의 대체적 방법 중 하나 또는 이들의 조합에 기초하여 결정한다.

- (1) 토지와 토지사용권을 일반유형자산의 기초 잔액에서 제외하고, 면적 정보와 미래 취득 비용을 공시
- (2) 토지와 토지사용권을 간주원가에 기초하여 기초 잔액 인식

이 기준은 국방부가 일반유형자산의 기초 잔액 설정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발행되었다. 이 기준에서 기초 잔액 설정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국방부가 시스템 개선 및 거래 절차 통제를 통해 미래 일반유형자산 취득과 관련한 신뢰성 있는 재무 정보를 산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출처) <http://www.fasab.gov/document-by-chapter>

② 만기 이전에 상환되는 부채에 적용하는 '특정 채무 변제 이슈'의 공개초안 제안

미국 주·지방정부 회계기준위원회(GASB)는 2016년 8월 29일 공개초안 '특정 채무 변제 이슈'를 발표하였다. 이 공개초안은 채무 상환 목적으로 신탁에 예치된 기존 자원(상환채의 수익금 제외)에 대한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현재 미국 주·지방정부 기준서에서 미지급 채무의 미래 상환 목적으로 신탁에 예치된 상환채의 수익금에 대한 회계처리 및 재무보고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나, 상환채의 수익금 이외 기존 자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공개초안은 신탁에 예치한 자원의 출처에 관계없이 회계처리 및 재무보고 지침을 표준화하는 것을 제안한다.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사용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거래의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동일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실상의 채무변제'는 채무가 현재 미지급 상태이더라도 만기 도래 시 채무상환을 위해 사용될

충분한 자원(무위험 화폐성 자산의 형태)이 취소불능 신탁에 예치되어 있는 상황을 말한다. 채무가 사실상 변제되었을 때 채무와 신탁에 예치된 자원은 더 이상 재무제표에 보고되지 아니하며,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하여야 한다.

이해관계자들은 2016년 10월 28일까지 이 공개초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출처) http://www.gasb.org/cs/ContentServer?c=GASBContent_C&pagename=GASB%2FGASBContent_C%2FGASBNewsPage&cid=1176168397080

다. 캐나다 공공부문의 회계기준위원회(PSAB⁷⁾) 동향

① 캐나다 공공부문의 회계기준 ‘PS 3410 정부이전’ 검토 진행사항 보고

공공부문의 회계기준위원회(The Public Sector Accounting Board, 이하 ‘PSAB’)는 지난 4월 20일 ‘PS 3410 정부이전’의 사후이행 검토결과, 추가검토를 수행한 **지불권한과 자본이전 시 수령자 입장에서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지불권한 (Authority to Pay)

“지불권한”에 대한 판단을 위한 추가적인 지침 제공은 하지 않고, 사례별로 전문가적 판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자본이전 시 수령자 입장에서의 자본이전 회계처리

PS 3410 기준서를 개발하는 동안, 수령자 입장에서의 자본이전 회계처리에 대해 수익인식과 관련하여 다음의 방식이 논의되어 왔다.

① 관련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 시 인식 VS ② 관련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서 인식

두 가지 수익인식을 모두 허용하여 자본이전 시 수령자 입장에서의 회계처리에서 비일관된 회계처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PASB는 공식 지침을 통해 일관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으나, 현행 기준서로는 이를 달성하기 어려웠다. 두 가지 수익인식기준을 허용하는 경우 비교가능성은 감소하지만, 공공부문에

7) PASB: Public Sector Accounting Board(캐나다 공공부문의 회계기준위원회)

대한 의사결정의 유용한 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현행기준서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웠다.

PSAB는 향후 제공될 새로운 개념체계 및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의 접근법에 따라 추가로 논의할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출처) <http://www.frascanada.ca/public-sector-accounting-board/index.aspx>

② 캐나다 공공부문회계기준 ‘종업원급여’에 대한 검토를 위한 의견수렴 회의개최 예고

캐나다 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PSAB)는 ‘PS 3250 퇴직급여’와 퇴직 후 급여, 유급휴가, 해고 수당을 포함한 ‘PS 3255 종업원급여’에 대한 기준의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두 기준서를 대체하는 새로운 종업원급여 기준서의 발행을 목적으로 하며, 단계별로 의견수렴 회의를 거칠 예정이다.

1단계에서는 타 회계기준의 종업원급여 기준과의 차이가 가장 큰 이연 규정과 할인율을 포함한 종업원 급여의 측정과 관련된 이슈를 다룬다.

2단계에서는 기존 확정급여와 확정기여 제도와는 다른 위험공유(risk sharing)제도와 관련된 회계처리, 복수사용자(multi-employer)를 위한 확정급여제도와 병기급여 회계처리, 기타 기존 지침의 개선사항 및 프로젝트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발견된 이슈를 해결한다.

의견수렴은 2016년 11월 8일부터 9일까지 오타와에서 열리는 캐나다 공공부문컨퍼런스(CPA Canada's Public Sector Conference 2016)와 2017년 1월 30일과 31일에 각각 영어와 프랑스어로 열리는 세미나 형태의 웹미나(webinar)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출처) <http://www.frascanada.ca/standards-for-public-sector-entities/resources/reference-materials/item83420.aspx>

02

재정통계 동향

1 2017년 예산안 및 '16~'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등

가. 2017년 예산안 편성

기획재정부는 2016년 8월 30일(화), 2017년 예산안을 발표하였다. 2017년 예산안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장적으로 편성하였으며, ① 대내외 여건 및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적극대응, ② 일자리 창출, 경제활력 제고 등을 위해 중점 투자, ③ 지속가능한 재정운용 기반 마련이라는 기본 방향으로 편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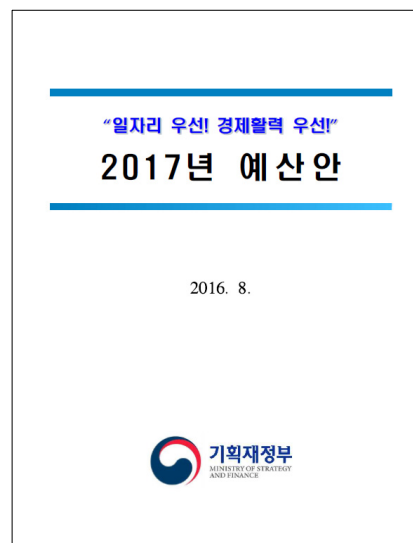
1) 재정총량

2017년 총수입은 내수회복세 및 법인영업실적 개선 등에 기인하여 전년 대비 6.0% 증가한 414.5조원으로 전망되며, 총지출은 경기 및 고용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확장 편성함에 따라 3.7% 증가한 400.7조원으로 전망된다. 또한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중기계획('15~'19계획)보다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위 : 조원)

구 분	2016년 ¹⁾ (A)	2017년 ¹⁾ (B)	증감(B-A)	
				%
◇ 총수입	391.2	414.5	23.3	6.0
- 국세	222.9	241.8	18.8	8.4
◇ 총지출	386.4	400.7	14.3	3.7
◇ 관리재정수지	△36.9	△28.1	8.8	0.6
◇ 국가채무	644.9	682.7	37.8	0.3

주: 1) 2016년은 본예산, 2017년은 예산안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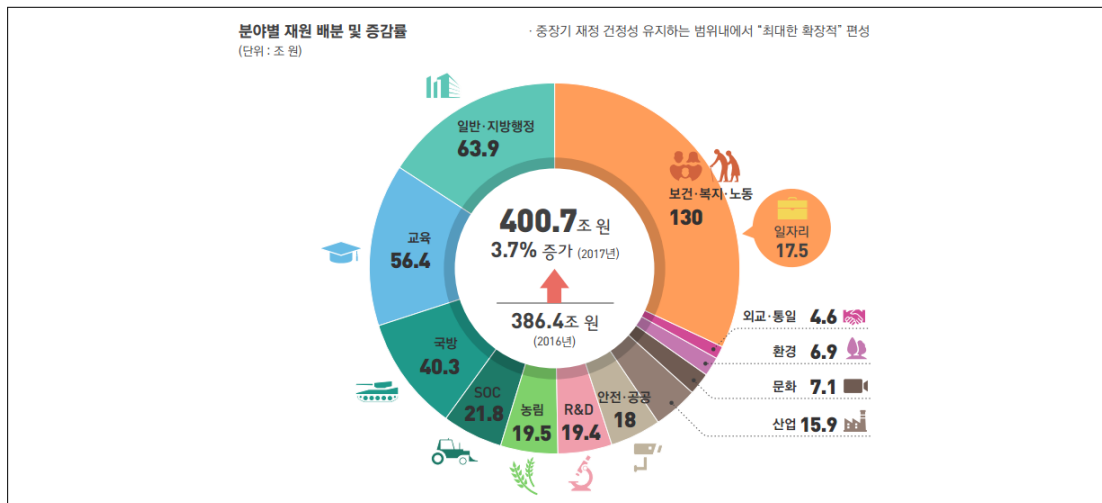
2) 분야별 자원배분

기획재정부는 저출산 극복 및 민생 안정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여 사회분야의 투자를 확대하고, 경제분야는 성과중심으로 효율화하고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분야별 자원배분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조원)

구 분	2016년 ¹⁾ (A)	2017년 ¹⁾ (B)	증감(B-A)	
				%
◆ 총지출	386.4	400.7	14.3	3.7
1. 보건·복지·노동	123.4	130.0	6.6	5.3
2. 교육	53.2	56.4	3.3	6.1
3. 문화·체육·관광	6.6	7.1	0.5	6.9
4. 환경	6.9	6.9	-	0.1
5. R&D	19.1	19.4	0.3	1.8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6.3	15.9	△0.3	△2.0
7. SOC	23.7	21.8	△1.9	△8.2
8. 농림·수산·식품	19.4	19.5	0.1	0.6
9. 국 방	38.8	40.3	1.5	4.0
10. 외교·통일	4.7	4.6	△0.1	△1.5
11. 공공질서·안전	17.5	18.0	0.5	3.1
12. 일반·지방행정	59.5	63.9	4.4	7.4

주: 1) 2016년은 본예산, 2017년은 예산안 기준



2017년 분야별 자원배분을 전년도와 비교할 경우 보건·복지·노동, 일반·지방행정, 교육, 국방 등에 대한 지출은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 SOC, 산업 및 외교·통일 분야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나.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제출

기획재정부는 2016년 8월 30일(화),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고 국회에 제출하였다. 계획에 따르면 재정수입은 경기회복세와 경제성장이 점차 개선됨에 따라 연평균 5% 증가할 전망이며, 재정지출은 복지수요 증가와 함께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소요가 확대되어 연평균 3.5%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재정수지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 등으로 단계적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국가채무는 GDP 대비 4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조원, %)

구분	2016년 ¹⁾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재정수입	401.0	414.5	436.0	456.3	476.4
재정지출	398.6	400.7	414.3	428.4	443.0
통합재정수지	2.4	13.8	21.7	27.9	33.4
(GDP 대비, %)	(0.1)	(0.8)	(1.2)	(1.5)	(1.7)
관리재정수지	△39.1	△28.1	△25.0	△23.2	△20.4
(GDP 대비, %)	(△2.4)	(△1.7)	(△1.4)	(△1.2)	(△1.0)
국가채무	637.8	682.7	722.5	756.8	793.5
(GDP 대비, %)	(39.3)	(40.4)	(40.9)	(40.7)	(40.7)

주: 1) 2016년은 추정안 기준

다. '16~'20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

기획재정부는 2016년 9월 2일(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가재정법에 따라 2016~2020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작성 대상인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총 부채는 전년도 수립한 계획에 비해 매년 12~17조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부채비율은 3~7%p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단위 : 조원, %, %p)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15~2019년 중장기(A)	부채	496.6	508.2	507.0	508.2	510.6	
	부채비율	197	191	177	170	163	
2016~2020년 중장기(B)	부채	480.9	491.0	495.0	495.6	495.9	496.5
	부채비율	194	184	174	165	158	151
차이(B-A)	부채	△15.7	△17.2	△12.0	△12.6	△14.7	
	부채비율	△3	△7	△3	△5	△5	

2 준정부기관 재무분석 결과

가. 준정부기관 자산 부채 내역

(단위: 억원, %)

구분		2014년(A)	2015년(B)	증감(B-A)	증감률 (B-A)/A
자산	유동자산	552,385	603,535	51,150	9.3
	비유동자산	1,022,410	1,367,980	345,569	33.8
	자산총계	1,574,796	1,971,515	396,719	25.2
부채	유동부채	285,182	235,384	△49,798	△17.5
	비유동부채	1,053,800	1,416,824	363,024	34.4
	부채총계	1,338,981	1,652,207	313,226	23.4
자본	납입자본	54,699	59,470	4,771	8.7
	이익잉여금(결손금)	171,340	249,953	78,613	45.9
	기타자본구성요소	9,771	9,880	109	1.1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235,810	319,303	83,492	35.4
	비지배지분	4	5	0.4	8.6
	자본총계	235,815	319,307	83,493	3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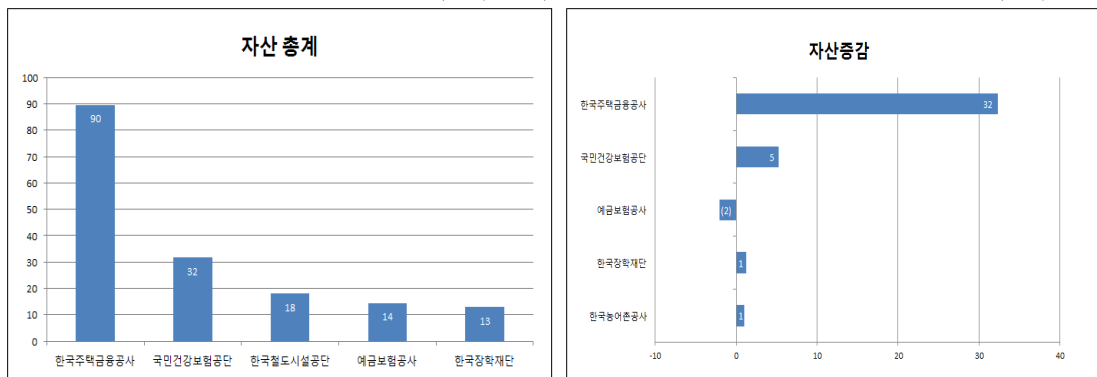
2015회계연도 80개 준정부기관의 총자산은 197조 1,515억원, 총부채는 165조 2,207억원, 총자본은 31조 9,307억원으로, 전년 대비 자산은 25.2%, 부채는 23.4%, 자본은 35.4% 증가하였다.

1) 자산

〈2015년 자산규모 및 자산증감 상위 5개 기관〉

(단위: 조원)

(단위: 조원)



준정부기관의 총자산은 197.2조원으로 전년 대비 39.7조원(25.2%) 증가하였고, 이 중 유동자산은 전년 대비 5.1조원 증가한 60.4조원으로 9.3% 증가하였다. 주요 증가 원인을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당기순이익 발생으로 인한 현금성자산 및 유동금융자산이 증가(4.4조원)하였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우는 대출채권 조기상환 등 여유자금과 예치금 및 유가증권이 증가(0.6조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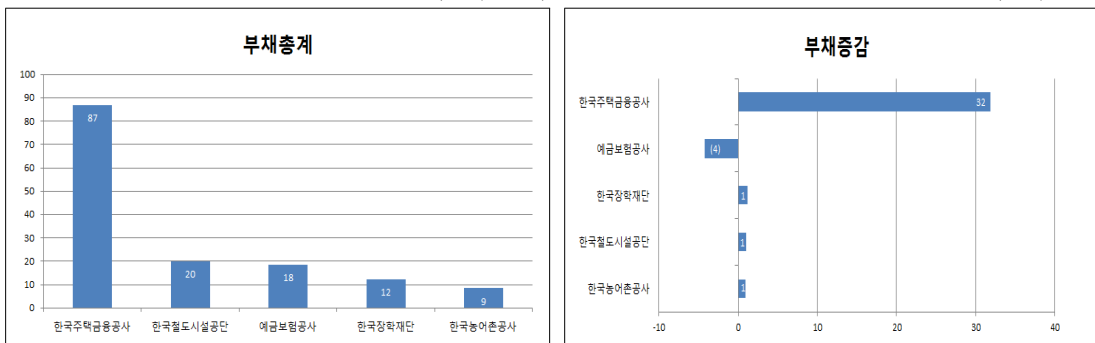
반면, 준정부기관의 비유동자산은 136.8조원으로 전년 대비 34.6조원(33.8%) 증가하였는데, 이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안심전환대출 시행으로 인한 대출채권 증가(31.6조원)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증가로 인한 대출채권 증가(1.1조원)로 인한 영향이 크다. 다만, 당기에 예금보험공사에서 파산 배당, 대손충당금 환입 등에 따른 구상채권 감소(2.1조원) 및 이에 따른 자금 유입액으로 예특채를 상환하여 비유동자산의 증가폭은 일부 상쇄되었다.

2) 부채

〈2015년 부채규모 및 부채증감 상위 5개 기관〉

(단위: 조원)

(단위: 조원)



준정부기관의 총부채는 165.2조원으로 전년 대비 31.3조원(23.4%) 증가하였다. 주요 증가요인은 금융부채의 증가로 볼 수 있고, 유동금융부채가 감소한 반면, 비유동금융부채는 증가하였다. 주요 증감 기관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안심전환대출 시행으로 인한 주택저당증권 발행으로 유동화부채가 32.3조원 증가하였고, 예금보험공사는 예특채 만기 상환에 따라 장단기 사채가 4.2조원 감소하였다. 또한,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재원 조달을 위한 재단채 발행으로 금융부채가 1.2조원 증가하였으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고속철도 자체 사업비 자금 조달을 위한 신규 사채 발행으로 금융부채가 1조원 증가하였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촌진흥청 등 지방이전 농업 관련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매입·처분을 위해 사채를 발행하고, 농지은행사업 운영을 위해 농지관리기금으로부터 차입함에 따라 금융부채가 0.8조원 증가하였다.

3) 자본

준정부기관의 총자본은 31.9조원으로 전년 대비 8.3조원(35.4%) 증가하였다. 이는 당기순이익(8.1조원)을 통한 이익잉여금 증가, 유상증자 및 정부출자를 통한 납입자본 증가(0.5조원)에 기인한다.

나. 준정부기관 손익 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14년(A)	2015년(B)	증 감(B-A)	증감률 (B-A)/A
매출액(영업수익)	1,121,462	1,210,580	89,118	7.9
(-) 영업비용	1,046,823	1,129,839	83,016	7.9
(=) 영업이익	74,640	80,740	6,100	8.2
(+) 영업외손익	△1,199	343	1,542	128.6
(=) 당기순이익	73,441	81,083	7,642	10.4
(+) 기타포괄손익	△2,207	△783	1,424	64.5
(=) 총포괄손익	71,233	80,300	9,067	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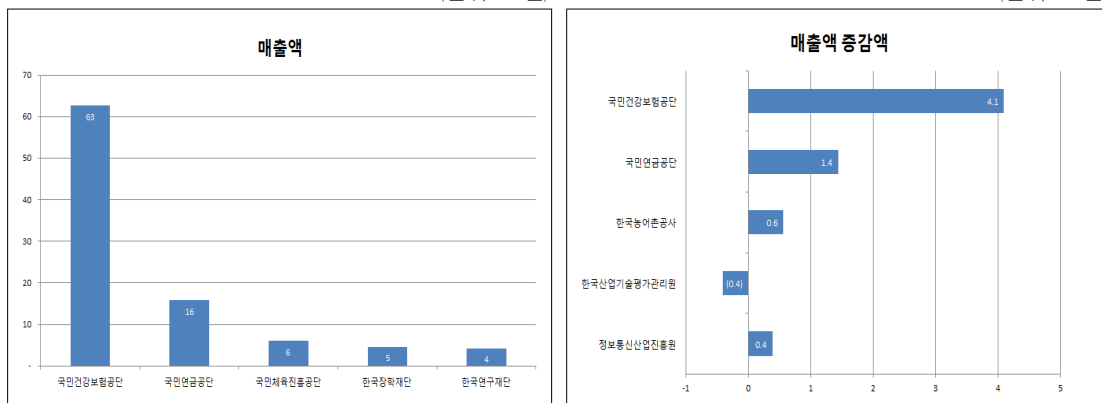
2015년 준정부기관의 매출액(영업수익)은 121조 580억원으로 전년 대비 7.9% 증가하였다. 영업 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8조 740억원 및 8조 1,083억원으로 전년 대비 8.2% 및 10.4% 증가하였다.

1) 매출액(영업수익)

〈2015년 매출규모 및 매출증감 상위 5개 기관〉

(단위: 조원)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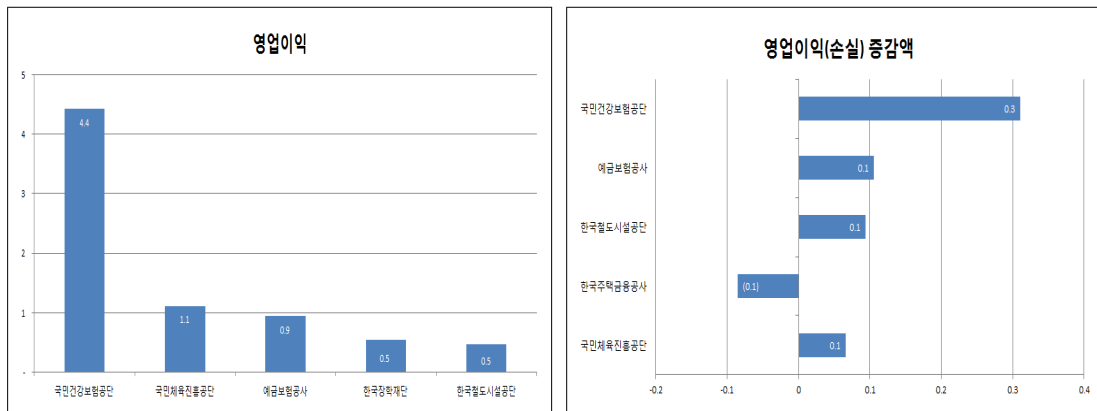
준정부기관의 매출액(영업수익)은 121.1조원으로 전년 대비 8.9조원(7.9%) 증가하였다. 매출액이 증가한 주된 이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율 인상 등으로 전년 대비 보험료수의 증가 및 담뱃값 상승으로 인한 담배부담금수입 증가 등으로 영업수익이 증가(4.1조원)하였으며, 국민연금공단 또한 연금수급자 증가로 인해 출연금수익이 증가(1.4조원)하였기 때문이다. 반면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기능조정, 사업이관 등으로 인해 영업수익이 감소(0.4조원)하였다.

2) 영업이익(손실)

〈2015년 영업이익(손실) 및 증감 상위 5개 기관〉

(단위: 조원)

(단위: 조원)



준정부기관의 영업이익은 8.1조원으로 전년 대비 0.6조원(8.2%) 증가하였는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영업이익은 감소(0.1조원)한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0.3조원), 예금보험공사(0.1조원) 등의 영업이익은 증가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영업수익이 증가(4.1조원)하였으나, 의료수가 인상, 보장성 확대 등에 따른 의료이용 증가 및 현금급여·검진비 증가 등으로 인한 보험급여비 증가로 영업비용 또한 증가(3.8조원)하여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증가(0.3조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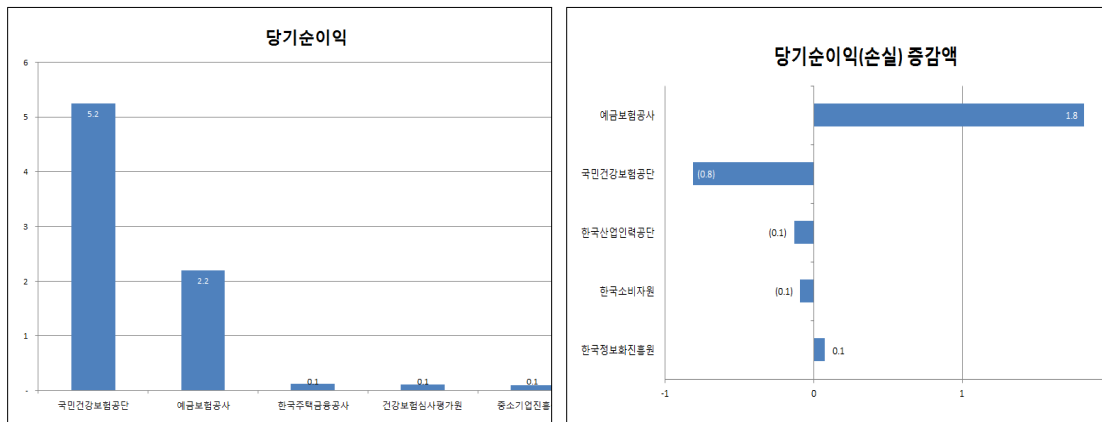
한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우 주택금융사업의 활성화로 인해 대출채권이 증가하여 이에 따른 이자수익이 증가하는 등 영업수익은 증가(0.1조원)하였으나 유동화부채 증가에 따른 이자비용이 증가하는 등 영업비용은 보다 큰 폭으로 상승하여 영업이익은 감소(0.1조원)하였다.

3) 당기순이익

〈2015년 당기순이익(손실) 및 증감 상위 5개 기관〉

(단위: 조원)

(단위: 조원)



준정부기관의 당기순이익은 8.1조원으로 전년 대비 0.8조원(10.4%) 증가하였다. 이는 예금보험공사의 당기순이익 1.8조원 증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0.8조원, 한국산업인력공단 △0.1조원 당기순이익 감소에 따른 영향이 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증가(0.3조원)하였으나 기타징수금수입의 감소, 부당이득금 등 미수금에 대한 대손상각비가 증가함에 따라 영업외손익은 전년 대비 감소(1.1조원)하여 당기순이익은 감소(0.8조원)하였다.

또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영업이익은 소폭 증가한 반면, 전기 지방이전에 따른 구청사 매각의 기저 효과로 인해 유형자산처분이익이 감소하는 등 전년 대비 영업외손익이 감소(0.2조원)함에 따라 당기순이익이 감소(0.1조원)하였다.

반면, 예금보험공사의 경우 영업이익의 증가 및 파산재단에 대한 구상채권 회수가능금액의 증가 등으로 인해 기타 대손충당금 환입이 발생하여 영업외손익이 전년 대비 증가(1.7조원)하여 당기순이익이 증가(1.8조원)하였다.

3 201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결산 결과

행정자치부는 2016년 6월 14일 201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결산 결과를 발표하였다.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며 크게 세 종류(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공단)로 구분된다. 지방공기업의 현황 및 2015회계연도 결산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지방공기업 연도별 현황

(단위: 개)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직영기업	상수도	115	115	116	116	116
	하수도	82	85	87	87	90
	공영개발 등	33	33	33	33	33
	지역개발기금	16	18	18	18	18
소 계		246	251	254	254	257
지방공사 지방공단	지하철	7	7	7	7	7
	도시개발	16	16	16	16	16
	기타공사	31	36	36	39	39
	지방공단	79	78	78	82	83
소 계		133	137	137	144	145
합 계		379	388	391	398	402

주: 지방직영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로 설치되며,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하여 설립하고 지방공단은 자치단체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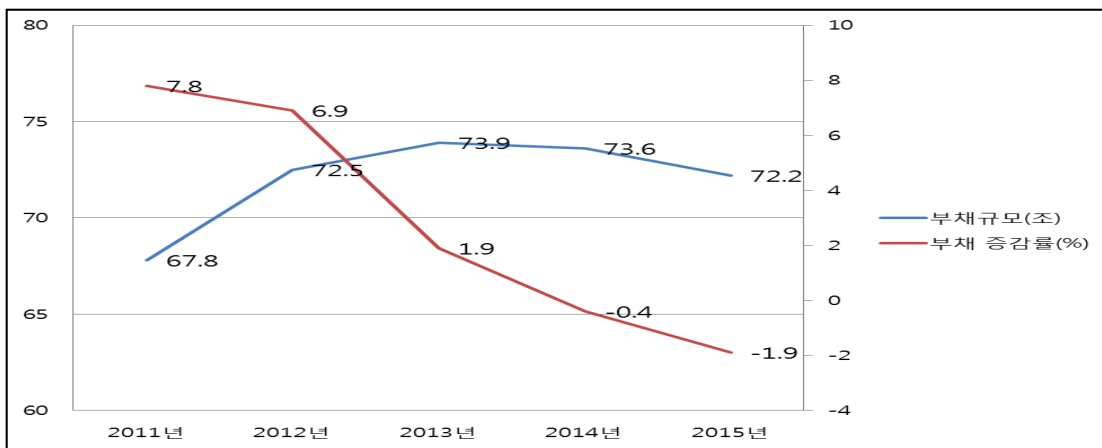
2) 201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결산 결과

(단위: 억원)

구 분		자산	부채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직영기업	상수도	295,082	9,499	△3,034	△870
	하수도	369,423	61,002	△16,764	△13,275
	공영개발 등	113,262	29,575	2,379	2,925
	지역개발기금	153,007	132,139	1,238	1,760
소 계		930,775	232,215	△16,180	△9,459

구 분		자산	부채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지방공사 지방공단	지하철	248,572	58,600	△10,108	△7,949
	도시개발	581,942	402,034	10,389	7,587
	기타공사	58,942	27,331	908	704
	지방공단	8,831	2,001	31	33
소 계		898,287	489,966	1,220	375
합 계		1,829,062	722,181	△14,960	△9,084

2015년 결산결과 지방공기업의 총 부채가 72.2조원으로 전년 대비 1.4조원 줄어들어 2년 연속 감소하였고, 부채비율은 65.2%로 2008년 이후 7년 만에 60%대로 낮아져 지방공기업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됐다고 밝혔다.



2014년부터 관리해 온 부채중점관리기관(26개)의 부채는 47.7조원으로 전년 대비 2.2조 줄어들어 목표치(48.7조원)보다 1조원 더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당기순손실은 9,084억원 발생하였는데, 공사·공단의 흑자전환에도 불구하고 상·하수도의 큰 적자폭, 공영개발의 수익감소가 주된 요인으로 분석됐다.

행정자치부는 부채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부채중점관리기관의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120%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하며,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경영구조개편, 생산원가절감 등 경영효율화를 이루는 데 매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단위: 억원, %)

구 분	2014년		2015년		부채증감
	부채	부채비율	부채	부채비율	
도시철도(5)	58,434	35.8	58,127	36.2	△307
도시개발공사(15)	417,763	250.5	401,255	226.1	△16,508
기타공사(6)	22,784	340.3	17,888	168.7	△4,896
합 계	498,981	148.3	477,270	136.9	△21,711

4 「재정건전화법 제정안」 입법예고

가. 추진배경

기획재정부는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총7장 17개 조문)의 입법예고를 실시(2016.8.10~2016.8.30)했다. 금번 제정안은 재정환경의 추세적 변화에 부응하는 재정운용의 새로운 틀 마련에 그 의의를 두고 있다.

나. 주요 내용

1) 재정준칙

국가채무(stock)와 재정수지(flow) 등 재정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채무준칙 및 수지준칙 등 재정준칙 도입을 법제화하였다. 이를 위해, 동 법안에 국가채무의 한도(GDP 대비 45% 이내)와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관리범위(GDP 대비 3% 이내)를 명시하였다.

2) 재정건전화계획 (중앙정부/지방정부/공공기관)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별로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게 하거나, 그 이행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재정전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재정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재정건전성 관리를 종합적으로 체계화하고, 건전재정 운용 관련 기관별 책임성을 강화하였다.

3) 장기재정전망 및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관리

현재 장기재정전망의 시행주기 및 절차 등을 법에 명시하고 전망시점·주기 등을 통일하였다. 또한, 각 사회보험별 장기재정전망 추계와 연계하여 사회보험별 재정건전화계획 수립·제출도 의무화되며, 결과를 재정전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다. 기대효과 및 향후 일정

재정준칙 도입으로 국가채무 및 관리재정수지 등 재정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사회보험별 재정건전화계획 수립을 통해 그간 재정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사회보험의 재정건전성 관리가 가능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 법안은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입법과정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여 9월에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향후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p>재정준칙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무준칙 (국가채무 GDP 대비 45%이내) · 수지준칙 (재정수지 ▲3% 이내) · 재정수반 법률안 비용추계서, 재원조달방안 첨부
	<p>재정건전화계획 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재정건전화 계획 수립 의무화
	<p>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성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험 정책협의회 구성 · 사회보험 통합재정 추계 실시

(출처: 기획재정부 : 2017년 나라살림 예산)

03

오피니언

국가회계의 독립성 확보가 왜 중요한가?



충북대학교 배기수 교수

회계문화는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회계적 가치관이나 의식구조를 의미한다. 복식부기에 대해 괴테(Göthe)는 “복식부기는 인간의 지혜가 낳은 가장 위대한 발명의 하나”라고 극찬하였으며, 쾰른(Sombart)는 “복식부기를 유기적인 사고의 기초 위에 세워진 우주의 질서”라고 하였다. 이렇게 복식부기는 합리주의를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 발전에 기폭제 역할을 하였으며, 현재에도 합리적인 사고를 유지하는 매우 중요한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다. 리틀턴(Littleton)은 복식부기의 생성은 사회경제적 여건이 성숙되었을 때 가능하게 된다고 하면서 사실적 요인인 사유재산권(private property), 자본(capital), 상업(commerce), 신용제도(credit system)와 형식적 요인인 서법(art of writing), 화폐(money), 산술(arithmetic)을 제시하였다. 사회경제적으로 이러한 7가지 조건을 충족할 때 복식부기 도입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사회경제적 성숙으로 인해 우리나라 국가회계 운영에 있어서 복식부기 도입이 가능해지게 됨에 따라 국가회계 운영에 복식부기를 도입한 것은 2011년부터이다. 올해는 국가회계에 복식부기를 도입한 지 5주년이 되는 매우 뜻깊은 해이다. 우리나라 국가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및 주석으로 구성된다. 이 중 재정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 현황을 나타내는 재무보고서로 국가의 자산이 미래에 상환해야 하는 부채와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자본 중 무엇으로 얼마만큼씩 구성되어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중요한 재무보고서이다. 자산은 미래 소비될

자원으로서 비용으로 전환되는 매우 중요한 자원이다. 자산이 없으면 사용할 수 있는 자원도 없고, 비용도 없다. 이렇게 소비된 자산은 재정운영표에 나타나는데, 재정운영표는 일정시점이 아닌 일정 기간 동안 소비된 자산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순자산변동표는 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부채와 자본 중 자본의 변동에 대한 내역을 보여주는 재무보고서로 국민들이 주인이라는 측면에서 눈여겨 볼만한 재무보고서이다. 마지막으로 주석은 재정상태표 등의 내용에 대해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작성하는 서류로 재무제표에 본문에 나타나지 못하는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2015년 말 기준 우리나라 총자산은 1,856.2조로 2014년 1,759.3조 대비 96.9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증가 원인을 살펴보면 부채가 2015년 말 1,285.2조로 2014년 1,212.7조 대비 72.5조나 증가하였다. 즉, 총자산 96.9조 증가 중에서 부채가 75%를 차지하여 총자산을 증가시킨 것이다. 부채는 알다시피 미래에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자산이다. 반면 순자산은 2015년 571조로 2014년 546.6조 대비 24.4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자산 증가의 대부분을 부채증가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다. 2015년도 재정운영순원가 중 프로그램원가는 236.6조원으로 2014년 262.9조원 대비 26.3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 국세수익은 274조로 2014년 207조 대비 67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국회회계정보는 단순한 숫자의 배열이 아니라 다양한 의사결정에 중요한 정보로 작용한다. 즉, 위의 자산, 부채, 순자산의 증감흐름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미래 상환의무가 존재하는 부채의 증가는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이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준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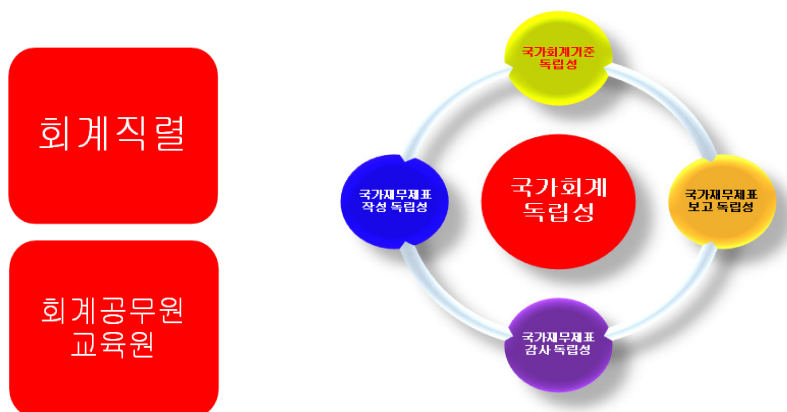
會計歷史에 조예가 깊은 학자인 ‘울프’는 회계의 역사는 문명의 역사이고, 회계는 그 시대의 거울이라고 하였다. 회계기법의 생성과 발달은 그 시대의 경제발달과 사회발달상황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되고 인류문명사의 발전 근원을 가늠하게 해주는 단서를 제공해준다는 의미이다. 회계의 기원은 인류문명의 발생과 궤를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회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기술한 제이컵 솔의 『회계는 어떻게 역사를 지배해왔는가』라는 책의 서문을 보면 “이탈리아 르네상스에서 시작하여 스페인 제국, 루이14세의 프랑스, 네덜란드 공화정, 대영제국, 초기 미국에 이르기까지, 효과적인 회계와 정치적 책임성은 사회의 흥망성쇠를 갈랐다. 건전한 회계 관행은 안정적인 정부와 약동적인 자본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 꼭 필요한 높은 수준의 신뢰를 낳았고, 부실한 회계와 그로 인한 책임성의 부재는 재정혼란과 경제 범죄, 사회 불안을 낳았다. …… 재무적 책임성을 달성하기가 왜 그렇게 어려운지 돌아보고 우리가 처한 난국을 타개하는 데 도움을 얻으려 한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국가회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회계는 합리주의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자본주의에서 매우 중요한 시스템인데, 그 회계시스템이 합리적인 시스템으로 작동하지 못하면 잘못된 회계정보를 산출하고 사회경제적으로 불합리한 면을 합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 사회실패를 야기한다. 이는 동서양의 수없이 많은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국가운영을 관장하는 국가회계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가회계에서 생성되는 회계정보에 대해 신뢰성이 부여되지 못하고, 숫자만 맞추는 회계보고서가 난무한다면 합리적인 사고로 사회가 운영된다고 누가 믿겠는가?

이상과 같이 국가회계의 중요성 측면에서 살펴볼 때 현재 세무직렬의 분리와 국세공무원교육원의 운영 등을 통해 세무직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되고 있는 부분을 정부회계 부문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국가회계정보가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세무직과 같이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되어야만 한다. 국가회계의 독립성은 어느 한쪽 측면만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회계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독립성을 갖출 때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 즉, 국가회계기준 독립성, 국가재무제표 작성 독립성, 국가재무제표 감사 독립성, 국가재무제표 보고 독립성을 들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회계직렬 분리와 국가회계공무원교육원과 같은 별도의 기구설립을 통해 지속적이고도 안정적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게 할 필요가 있다. 국가회계의 독립성을 이루는 방안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국가회계의 독립성확보 방안



국가회계의 독립성 확보를 통해 신뢰성 있는 국가회계정보를 생산해 낼 때 우리 사회는 합리주의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사회경제 발전이 가능하다. 비합리적인 국가운영에 대해 이를 합리화시키는 것처럼 보이는 숫자놀음의 회계는 반드시 사회적 재앙을 초래한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알고 있다. 신뢰성 있는 국가회계정보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세무직과 같은 회계직렬 분리와 회계공무원교육원 설립 등을 통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04

센터 동향

1 「2016 재무결산 오류사례 해설」 발간 지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16 재무결산 오류사례 해설」 작성을 지원하였다. 「2016 재무결산 오류사례 해설」은 작년에 발간한 「2015 재무결산 오류사례 해설」을 업데이트한 것으로, 2015회계년도 감사원 지적사항, 국가회계편람 개정사항 및 디브레인 시스템 개선사항 등을 새로이 책자에 반영하였다. 「2016 재무결산 오류사례 해설」은 재무결산 오류사례 개요, 업무담당자 오류사례, 결산담당자 오류사례 등 세 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재무결산오류사례 개요에서는 최근 5개년도 동안의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분석을 통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연례적 지적사항에 대한 발생원인과 점검 및 조치방안을 서술하였다. 국가회계 기준 미숙지 등으로 인한 단순 회계처리 오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감액·대손 등 전문가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 관련 지적사항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관련 오류가 재발되지 않도록 결산 담당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업무담당자 오류사례 파트에서는 수입·지출, 국유재산·물품 등 디브레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 사항을 알기 쉽게 서술하고 있으며, 결산담당자 오류사례 파트는 결산업무 순서대로 오류의 유형과 점검 조치방법을 제시하여 담당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2016 재무결산 오류사례 해설」은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홈페이지(<http://gafsc.kipf.re.kr>)나 디브레인 게시판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담당 공무원들이 결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국가회계재정통계 자문위원회 개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국가회계재정통계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 위촉기간 만료('16년 6월)에 따라 자문위원회의 기능강화 및 내실화, 국가회계 및 재정통계 분야의 전문가 저변확대를 목적으로 자문위원단을 재구성(신규위촉 5명*, 재위촉 3명**)하였다. 특히,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공공부문 회계기준 관련 전문가 자문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자문위원회 내 질의회신 분과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공공부문 회계기준 해석에 관한 자문을 요청할 예정이다.

* 정석우(고려대), 김동욱(제주대), 배기수(충북대), 이아영(강원대), 최연식(경희대)

** 박성동(기획재정부), 손성규(연세대), 전중열(서울과기대)

한편,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제19차 국가회계재정통계자문위원회를 9월 2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PEMNA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자문위원회에서는 신규위촉 또는 재위촉된 국내 자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또한, “중앙정부부문 발생주의 도입 5주년 기념세미나” 진행경과를 보고하였고, “국민연금기금 회계처리”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이번 자문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5주년 기념세미나 계획(안)의 일부 내용을 보완하였다. 또한, 국민연금기금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추가로 검토하여 재무제표 분석 및 활용 시 발생할 문제 제기에 대비할 예정이다.



〈국가회계재정통계 자문위원회 (9.2.), 조세재정연 PEMNA회의실〉

3 「중앙정부 발생주의 재무정보의 현재와 미래」 연구 중간보고회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5주년 기념 세미나 발표를 목적으로 한국회계학회에 위탁한 “중앙정부 발생주의 재무정보의 현재와 미래 연구”의 중간보고회를 9월 9일 조세재정연구원 PEMNA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중앙정부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 이후 현재까지의 운영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미래의 발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발생주의 국가회계정보의 도입 및 활용성과에 대하여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위 연구는 공공부문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에 관한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조사하고, 중앙정부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성과에 대한 문헌조사와 도입성과 측정을 위한 전문가 그룹 인터뷰 및 설문조사 등을 수행하여 중앙정부 발생주의 회계제도 운영 성과를 평가하였으며, 이를 통해 향후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발전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다.



〈위탁연구 중간보고회 (9.9.), 조세재정연 PEMNA회의실〉

4 5주년 기념 세미나 준비위원회 회의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중앙정부부문 발생주의 도입 5주년 기념 세미나의 성공적인 개최와 사전 홍보를 위하여 발족된 준비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였으며, 10월 중 최종 점검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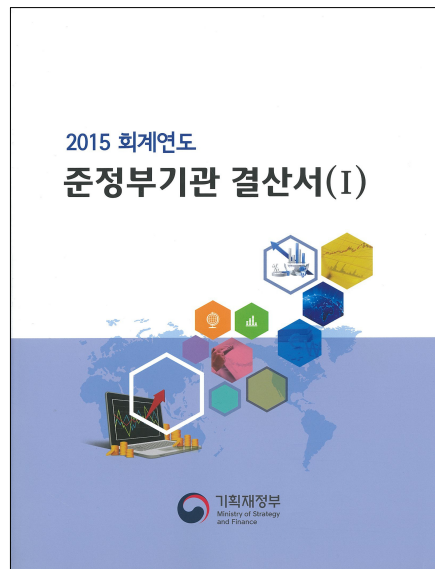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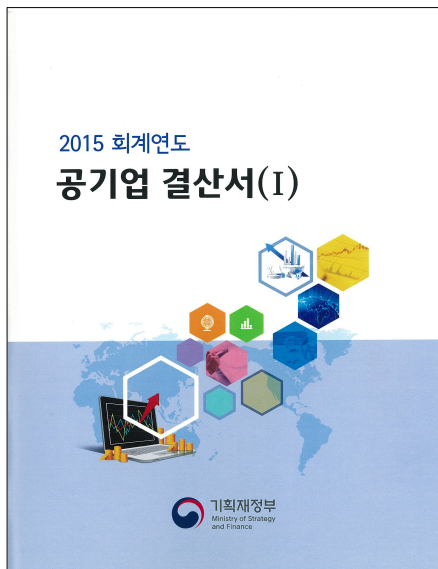
〈준비T/F 회의 개최 현황〉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일정	6/13(금)	6/30(목)	7/18(월)	8/24(금)	10월 중
참석자	전체회의	섭외 소위원회	전체 회의	섭외 소위원회	전체 회의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준비위원회 회의를 통해 5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계획, 해외인사 초청관련 주제발표 및 업무협약, 참석내빈 및 좌담회 구성, 언론사 홍보(전문가 기고) 등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세미나 준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세미나는 11월11일 여의도 국민일보 본사 12층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5 2015회계연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서 제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서 작성을 지원하였으며,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제43조 6항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서등을 2016년 8월 19일에 국회에 제출하였고, 주요 결산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재무상태

(단위: 조원, %)

구 분	자산				부채			
	2014년 (A)	2015년 (B)	증 감 (B-A)	증감률 (B-A)/A	2014년 (A)	2015년 (B)	증 감 (B-A)	증감률 (B-A)/A
공기업	559.2	553.2	△6.0	△1.1	377.1	365.0	△12.1	△3.2
준정부기관	157.5	197.2	39.7	25.2	133.9	165.2	31.3	23.4
합 계	716.7	750.4	33.7	4.7	511.0	530.2	19.2	3.8

(자산) 2015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자산은 750.4조원으로 전년 대비 33.7조원(4.7%) 증가했으며, 주요 증감원인은 주택금융공사의 안심전환대출 시행에 따른 대출채권 증가와 한국전력공사의 본사부지 처분이익으로 인한 증가 때문이다.

(부채) 2015년 공기업·준정부기관 부채는 530.2조원으로 전년 대비 19.2조원(3.8%) 증가했으며, 주요 증감원인은 주택금융공사의 안심전환대출 시행에 따른 유동화부채 증가 때문이다.

2) 손익상황

(단위: 조원, %)

구 분	영업수익(매출액)				당기순이익			
	2014년 (A)	2015년 (B)	증 감 (B-A)	증감률 (B-A)/A	2014년 (A)	2015년 (B)	증 감 (B-A)	증감률 (B-A)/A
공기업	153.4	147.1	△6.3	△4.1	4.0	4.6	0.5	13.6
준정부기관	112.1	121.1	8.9	7.9	7.3	8.1	0.8	10.4
합 계	265.5	268.2	2.7	1.0	11.4	12.7	1.3	11.5

(당기순이익) 2015년 공기업·준정부기관 당기순이익은 12.7조원으로 전년 대비 1.3조원(11.5%) 증가했으며, 주요 증감원인은 4대강 자산손상 등으로 수자원공사 6.1조원 순이익 감소, 유가하락에 따른 자산 손상 등으로 석유공사 2.9조원 순이익 감소, 연료비 감소 및 본사부지 처분이익 등으로 인한 한국전력공사 10.6조원 당기순이익 증가 때문이다.

05

회의 및 세미나

1 「재정전문가 네트워크 정부회계분과 중간보고회」 결과보고

1. 개요

- 일시 및 장소: '16.8.20.(토) 11:00~12:10, 곤지암 리조트
- 과제별 발표자

No.	발표자	연구 과제
1	강인재	원가정보 활용이 유용한 재정사업 유형에 관한 연구
2	강태혁	발생주의 계정과목 체계 개편방안 연구
3	김이배	정부부문의 합리적 간접원가 배부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4	문두철	공공기관 타인자본비용과 신용위험에 관한 연구
5	박성환	정부부문 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 시설의 공정가액 측정에 대한 연구
6	배기수	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이익관리 행태 변화 연구
7	임동완	중앙정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표명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8	정창훈	정부부문 회계책임성 제고를 위한 방안 연구

-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참석자: 정도진 소장 외 1인



2. 주제발표 내용요약

〈발표 1〉 원가정보 활용이 유용한 재정사업 유형에 관한 연구(연구자: 강인재)

- 원가대상사업으로서 프로그램의 정의와 유형이 재정관리 현장에서 적절한지를 검토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원가정보 활용이 유용한 사업유형을 도출하고자 함

〈발표 2〉 발생주의 계정과목 체계 개편방안 연구(연구자: 강태혁)

- 예산지출 비목을 예산통제의 효율화 관점에서 재구성하는 방안 및 지출비목별 재정통제의 표준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 또한 기능별 사업 분류체계와 경비의 경제성질별 분류체계의 정비방안 분석 및 비목 분류의 효율적 정비 방안을 탐색하고자 함

〈발표 3〉 정부부문의 합리적 간접원가 배부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연구자: 김이배)

- 정확한 사업 총원가 산정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간접원가 배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는 정부 부문의 합리적 간접원가(특히, 행정운영경비) 배부를 위한 기준 마련에 관한 연구이며, 회계실체별로 원가계산을 달리하는 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함

〈발표 4〉 공공기관 타인자본비용과 신용위험에 관한 연구(연구자: 문두철)

- 공공기관의 채권 발행이 증가하면서 금리 등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확대로 공사채 발행에 따른 자본비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따라서 공사채 발행자료를 바탕으로 표본기간 동안의 공사채 스프레드의 수준과 연도별 추이를 분석하고 공사채 스프레드가 공공기관 유형, 발행만기, 손실보전 조항의 유무, 그리고 정부주무부처에 따라 차이 발생 여부를 분석하고자 함

〈발표 5〉 정부부문 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의 공정가액 측정에 대한 연구(연구자: 박성환)

- 사회기반시설의 회계처리 및 공시실태와 국제비교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제시
- 특히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도로자산을 중심으로 최초인식, 감가상각, 재평가, 취득 이후의 지출, 주석공시 실태를 분석과 국제비교를 통한 개선방안을 제시

〈발표 6〉 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이익관리 행태 변화 연구(연구자: 배기수)

- 공공기관 지정으로 정보공시 확대 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회계정보의 투명성에 변화를 초래하게 되며,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회계처리 유인이 존재함
- 따라서 이익조정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지정이 경영자의 이익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이익조정 여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함

〈발표 7〉 중앙정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표명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연구자: 임동완)

- 우리나라는 왜 회계감사제도가 아닌 회계검사제도를 운영하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하여,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회계검사 제도 운영의 맥락을 검토하고 감사의견 표명의 필요성과 감사의견 표명을 위한 제반사항을 제언

〈발표 8〉 정부부문 회계책임성 제고를 위한 방안 연구(연구자: 정창훈)

- 국가 및 자치단체 회계책임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회계담당공무원들의 업무실태를 파악하고 전문성 정도를 측정
- 국가 및 자치단체 회계책임관들의 자질, 권한, 책임 등을 파악하기 위한 관련법제도 분석 및 설문조사 실시
- 현행 회계책임성과 관련된 문제점 분석 및 향후 회계책임성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도출

3. 토론 주요내용

공통의견

(정도진) 센터 검토의견 반영 부탁(센터의견 별첨)

(백필규) 원가정보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보 공개 활성화 필요

〈발표 1, 2〉 원가정보 활용이 유용한 재정사업 유형에 관한 연구, 발생주의 계정과목 체계 개편 방안 연구

(김정훈) 재정정책 등 의사결정에서 원가정보의 활용이 어떠한 실익이 있는지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발표 4> 공공기관 타인자본비용과 신용위험에 관한 연구

(지흥민)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자본조달 비용측정의 차이점 검토 요구

□ <발표 6> 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이익관리 행태 변화 연구

(최준욱) 공공기관이 이익조정을 수행할 동기가 있으며, 실제로 실행능력에 대한 검토 필요

(최준욱) 공공기관의 이익조정에 있어서 외부 영향요인에 대한 검토 필요

(한종석) 공공기관의 이익조정 결과를 공공기관 유형별로 구분하여 검토 필요

4. 검토의견(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발표 1> 원가정보 활용이 유용한 재정사업 유형에 관한 연구(이남주 전문연구원)

- (사업분류기준의 명확화 관련) 사업분류기준 관련 지침이나 제도가 미비하다는 의미인지, 실무적 관행이 잘못되었다는 의미인지 정확하게 기술 필요
- (오류 수정) “세부사업별로 원가대상을 설정하여 원가계산을 하고 외부보고를 위해서는 기능별 단위로 집계하고 있음” → 세부 사업별이 아닌 “프로그램별 원가계산”으로 수정 필요
- 향후 연구내용 중 “어떤 사업에 원가활용이 필요하며, 현재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를 분석”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보고서 작성 필요

<발표 2> 정부 예산지출비목 분류체계의 합리화 방안 연구(임정혁 회계사)

- 세출예산과목의 체계와 세입예산과목의 체계가 상당히 상이하여 서로 연관성이 높은 예산과목 (예: 이자지출 vs 이자수입)을 일목요연하게 비교·분석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세출예산과목 체계의 합리화 방안 연구 시 세입예산과목 체계의 정비방안도 제시할 필요가 있음

<발표 3> 정부부문의 합리적인 간접원가 배부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이명인 회계사)

- 사업형회계만 간접원가 배부를 하고 있는 현행 지침의 타당성 검토
 - 사업형회계와 행정형회계 이원화된 원가계산제도의 타당성(일원화 필요성) 검토
- 정부부문의 특성을 고려할 때 full costing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 필요
- 연구 내용에 ‘정부부문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간접원가 배부기준 제시’ 필요(과제명 참고)

〈발표 4〉 공공기관 타인자본비용과 신용위험에 관한 연구(최종갑 회계사)

- 공사채스프레드가 크게 발생했었던 기관 및 공사채를 중심으로 공사채 스프레드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에 대한 세부 분석 필요
(예를 들어 재무구조, 기관의 특성, 발행 당시 특수한 사건 등)
- 특히, 기관별 재무자료 검토를 통한 스프레드 발생원인 분석 필요

〈발표 5〉 정부부문 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의 회계처리에 대한 연구(이소정 회계사)

- (연구범위 집중) 중앙과 지방의 회계기준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연구 범위를 지방정부를 제외한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할 것을 제안
 - 사회기반시설의 최초인식, 취득 이후 지출, 감가상각은 타 회계기준과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분석보다 ① 재평가, ② 사용수익권(국가회계기준은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인식하나 IPSAS는 부채로 인식), ③ 주석공시 실태를 중심으로 타 회계기준과 비교하여 시사점 도출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과의 비교(이미 센터 내부적으로 비교 분석한 자료 많음)보다는 해외 주요국 정부회계기준(영국, 호주, 뉴질랜드 포함)과 비교하는 것이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 개선에 도움될 것으로 예상
- 최초 과제명이 ‘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의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연구’였는데, ‘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의 회계처리와 공시 개선’으로 변경된 것인지? 회계처리에 관한 연구에 공정가치 측정에 관한 연구 포함 필요
 - 현재 국가회계는 재평가 수행 시 공정가치를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정가치의 합리적 증거가 없는 경우 대체적 평가방법 역시 허용하고 있음. 대체적 평가방법(공시지가, 기준시가 등)의 경우 시가와 중요한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공시지가, 기준시가 등을 조정 없이 그대로 인정하고 있음. 국가 회계의 이러한 공정가치 측정에 대하여 민간 및 해외 공공부문의 공정가치 측정과 비교하여 타당성 검토 필요
 - 현재 국가회계의 공정가치 측정이 공정가치로 유형자산을 측정하는 영국이나 뉴질랜드 등과 비교할 때 어떤 수준인지, 국가회계의 공정가치 측정 방법을 개선할 방안은 있는지 제언

〈발표 6〉 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이익관리 행태 변화 연구(엄기중 연구원)

- 공공기관의 지정으로 인해 기회주의적 회계처리 유인이 발생할 수 있지만, 반대로 정보공시의 확대로 기회주의적 회계처리 유인이 감소할 여지도 있음
 - 공공기관의 이익조정을 지정 전년도와 지정년도를 비교해 본다면, 공공기관 이익관리 행태를 파악할 수 있음
- 한편, 연구에서 사용한 ‘횡단면 보고이익분포 모형’은 이익조정 수준을 나타내는 수치는 아니며, 이익조정 가능성에 대한 분포임을 염두에 뒤야 함
- 공공기관의 이익조정 행태 변화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 원인에 대한 연구 필요
 - 이익조정 동기에는 적자회피적 이익조정 이외에도 이익평준화, 빅베스 등 다양한 동기가 존재함
-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의 이익조정 행태 검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 제시와 향후 개선방안 도출 등 연구의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이 필요함

〈발표 7〉 중앙정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표명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오예정 회계사)

- 중간보고(‘16.6.3.) 논의 결과를 연구보고서에 충실히 반영해 줄 것을 요청
 - (검사, 감사, 검토 등의 명확한 용어 정리 필요) ‘검사와 감사는 동일한 용어로 구분이 불필요하다’는 토론자(이경섭 위원) 의견이 존재하였으므로, 감사원 검사, 민간기업 감사, 지방자치단체 검토 간 비교를 통하여 명확한 용어 정리 필요
 - (보고서 제목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내용 보완) 보고서 초안은 국가별로 감사원의 독립성, 설치근거, 업무 등의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였는데, 보고서 초안의 연구 방향이 감사원에 대한 연구인지, 국가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표명에 대한 연구인지 불명확함
 - (감사의견 표명의 장단점 분석 등 보완) 감사의견 표명의 필요성을 신뢰성 측면에서 접근하였는데 감사의견 표명 시 실제로 신뢰성이 높아지는지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며, 감사의견 표명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효과 등 장단점 분석 필요

〈발표 8〉 국가 및 지방정부 회계책임성 제고를 위한 비교 연구(윤성호 회계사)

- 회계책임성 제고 논의 전에 공공부문(특히, 중앙정부 부문) 회계책임성에 대한 명확한 정의 필요

- 책임성 제고를 위한 방안 제시 필요
 - 부처별 오류 공시, 회계책임관협의회 법제화 등
- 「국가회계법」 제24조에 따라, 회계책임관은 내부통제에 관한 의무가 존재하므로 설문조사 또는 인터뷰 시 각 부처의 내부통제 현황에 대한 조사도 추가

2 IPSASB 위원장 면담 및 3분기 정례회의 참관

1. 개요

- 목 적: IPSASB(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 위원장 면담 및 IPSASB 정례회의 참관
- 출장기간: 2016. 9.18. ~ 2016. 9.23.
- 출 장 지: Toronto, Canada
- 출 장 자: (센터) 정도진 소장, 김은영 팀장, 한소영, 김선재 회계사
(기획재정부) 임동규 과장, 소광문, 김지선 사무관
- 회의일정표 (9/19 ~ 21)

일자	주제	내용	시간
9/19	IPSASB 위원장 면담	IPSASB 위원선출 및 한국참여 방안에 관한 논의	17:00 - 18:00
9/20	개회사	참석자 확인, 과거 회의결과 및 활동현황 발표	9:00 - 9:45
	지배구조	PIC (공공 이익 위원회) 와 CAG (자문그룹)개발에 대한 구두 보고	9:45 - 10:10
	작업 계획에 대한 기술 담당자의 보고	작업 계획 이슈의 요약	10:10 - 10:40
	수익과 비교환비용	이슈 논의	11:00 - 12:30
	수익과 비교환비용 (계속)	이슈 논의	1:30 - 3:10
	수익과 비교환비용 (계속)	이슈 논의	3:30 - 5:00
9/21	금융상품	이슈 논의	9:00 - 10:40
	금융상품 (계속)	이슈 논의	11:00 - 12:30
	유산자산	이슈 논의	1:30 - 3:10
	유산자산 (계속)	이슈 논의	3:30 - 5:00



〈Toronto, Canada, IPSASB 회의 장소〉

2. 결과보고

1. IPSASB 위원장 면담 결과보고

□ IPSASB 위원 선출 관련 논의

- 2016년 IPSASB 위원 추천과정의 행정적 오류에 대한 해명
 - Ian Carruthers는 미팅에서 정도진 소장의 IPSASB 위원 추천과 관련해 발생한 행정적 오류에 대해 다시 해명하였고, 일반적인 IPSASB 위원 추천 및 선출 과정에 대해 설명함
- 일반적인 IPSASB 위원 선출시 추천(Nomination)과정
 - IFAC Nominations Committee(이하 '추천위원회')는 독립된 집단으로 IFAC의 기준 설립 기관(IPSASB, IAASB, IAESB, IESBA)을 위한 후보자를 선정함
 - 지원자는 IFAC의 추천위원회에 정해진 날짜*(2016년 1월 31일)까지 지원을 해야 함

* 2017년 IPSASB 위원 선출과정은 이미 종료되었고, 2018년 IPSASB 위원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2017년 1월까지 지원서를 접수해야 함

- 현재 IPSASB위원 구성 및 지역배분이 존재하는지
 - 현재 IPSASB 위원은 17명이며, 임기는 3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전문성, 지역,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적으로 선임하며, 아시아 지역의 경우 현재 일본, 중국, 파키스탄에서 참여하고 있음
 - IPSASB 위원은 일시 교체방식이 아닌 매해 일정위원을 교체하고 신입함
- IPSASB 위원에 대한 보수가 있는지, TA(Technical Advisory)는 어떤 방식으로 배정되고 운영되는지, TA의 자격요건이 별도로 존재하는지
 - IPSASB 위원의 활동 및 참여는 항공, 숙박 등의 경비를 포함하여 모두 자비로 이루어지며, TA는 1 ~ 2명을 둘 수 있고, 이에 대한 보수 등도 해당 IPSASB 위원이 직접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TA에 대한 학력 등의 별도의 자격요건은 없음
- IPSASB 활동에 한국의 참여 방안 논의
 - IPSASB CAG(Consultative Advisory Group) 또는 IPSASB 위원 활동, 위원 선출 후 활동하는 방안 이외에 한국이 IPSASB에 기여하는 방안
 - 한국의 IPSAS 도입 상황에 대한 비디오* 또는 짧은 기사
 - * IPSASB는 현재 “A Closer Look at:” 시리즈를 통해 스위스, 뉴질랜드, 브라질, 파나마, 사우스 아프리카 등의 발생주의 도입 또는 IPSAS 도입 사례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음
 - IPSASB 정례회의 등 기준제정 과정에 Observer로 참여
 - National Standards Setters Forum 참석(2017년 7월 개최예정)
 - 직원 파견 / IPSASB 프로젝트 지원 / Project Task Force 참여
 - 한국의 공공부문 회계 관련 포럼, 세미나 등에 IPSASB 위원 초대
 - IPSASB 자문보고서, 공개초안 등에 대한 의견표명
 - 공공부문 회계의 국제 동향과 발생주의 재무정보 활용방안
 - 한국의 경우 발생주의의 성공적 정착과 도입이 이루어졌으나, 재무정보의 활용에 어려움이 많음. 다른 발생주의 도입국가의 성공적인 활용사례에 대한 공유할 만한 내용이 있는지
 - IPSASB의 경우에는 기준제정이 본연의 목적이며, 이를 활용한 방안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지 않으나, 발생주의 도입 국가 및 국제기구 등이 증가하고 있음

- 뉴질랜드,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의 국가가 IPSAS를 도입하였으며, 유럽지역은 EPSAS (European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IPSAS를 기초로 한 제정)를 도입하는 추세이며, 국가뿐 아니라 UN 시스템과 UN 기관, OECD와 같은 국제기구들*도 IPSAS를 도입하고 있음

* IMF와 세계은행의 경우 개발도상국의 공공부문 재무관리시스템의 발전을 돕기 위해 IPSAS 도입에 대해 권장하고 있음

○ IPSASB 및 공공부문 발생주의 회계과 직면한 과제

- IPSASB는 ① 기준 제정 인력 등 자원의 부족의 부족 ② IPSAS의 다양한 도입과 이행 방법의 차이(IPSAS를 완전히 도입하거나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하고 IPSAS를 참조하여 국내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등 국가별로 차이가 큼) ③ 정보의 투명성과 이용가능성



2. IPSASB 정례회의 결과보고

□ 수익과 비교환비용

- (발표자) John Stanford
- (목적) 자문보고서의 주요이슈에 대해 논의: 자문보고서의 구조, 이행의무(performance obligation)와 집행가능성(enforceability) 논의
- (추진경과) 기존 회의에서 자문보고서의 새로운 구조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IFRS 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성격이 아닌 이행의무와 관련된 거래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대칭(symmetry)이라는 용어를 삭제

〈주요 이슈사항〉

- 자문보고서의 구조
 - (변경내용) 수익과 비교환비용에 대한 챕터의 경우 개정된 이행의무(performance obligation)와 개정된 「IPSAS 23; 비교환거래로 인한 수익」 접근법을 포함하여 ‘수익과 비교환비용 자문 보고서’ 구조 변경
 - 챕터 5 측정(Measurement)에서 비계약적/법령에 의한 미수금(statutory receivables) 또는 미지급금(statutory payables)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수정
- 공공부문 이행의무 접근법에서 “집행가능성”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동의하는지를 논의함
 - 집행가능성은 공공부문 이행의무 접근방식에 있어 중요한 용어로 공공부문 이행의무의 성격은 법적 그리고 그와 동등한 구속력 있는 협의를 통해 성립하며, 협의에서 합의된 이행의무는 집행 가능함
- 금융상품(IPSAS 28-30 업데이트)
 - (발표자) Lucy Qi, Ross Smith
 - (목적) 「IFRS 9; 금융상품」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IPSAS 기준에 반영하기 위한 공개초안의 작성과 IFRS와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검토
 - (추진경과) 2015년 12월 정례회의 시 IPSASB는 금융상품 프로젝트를 승인하였고, 동 프로젝트의 범위가 관련 ISAB 규정과 정합성을 유지하는 것임을 결정함

〈주요 이슈사항〉

- 공개초안 작성을 위한 과정에 동의하는지 여부
- 금융상품 관련 기준서*가 「IFRS 9; 금융상품」의 내용에 부합하는 기준서로 발전함

* 「IPSAS 28; Financial Instruments: Presentation, (금융상품: 표시)」, 「IPSAS 29; Financial Instruments: Recognition and Measurement,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IPSAS 30; Financial Instruments: Disclosures, (금융상품: 공시)」

- 공개초안에 반영될 용어 정의의 변경에 대해 동의하는지 여부

IFRS9	IPSAS ED
net income	revenue
profit or loss	surplus or deficit
other comprehensive income	net assets/equity
fair value through profit or loss	fair value through surplus or deficit
fair value through other comprehensive income	fair value through net assets/equity
group	economic entity
parenty entity	controlling entity
subsidiary	controlled entity
business combination	entity combination
business model	management model
LIBOR	interbank offered rate
shareholder	entity's owner
reliable	faithfully representative

- 최근 수행된 기타 프로젝트와의 일관성을 위해 ‘공정가치’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
- 금융상품의 분류 원칙과 관련하여 공개초안에 제시된 의견에 동의하는지에 대한 논의
- 지분의 측정(measurement) 및 비상장 지분(unquoted equity)과 관련하여 공개초안에 제시된 의견에 동의 여부 논의
- 비교환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지분상품과 관련하여 세 가지 대안(A,B,C) 중 연구진이 권고하는 C안을 지지하는지 여부 검토
 - A안: ED에 적용지침(지분상품 중 보조금 부분을 평가하는 것을 필요로 하고 ‘할인’ 요소를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음)을 포함하는 것

- B안: 할인된 대출과 유사한 적용지침을 포함하는 것(할인 요소 = 지분의 공정 가치를 초과하는 금액)
- C안: 지분상품과 채무상품간의 중대한 차이 그리고 공개초안과 「IPSAS 23; 비교환거래로 인한 수익」에 충분한 지침이 존재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침을 포함하지 않음

□ 유산자산

- (발표자) Gwenda Jensen
- (목적) 자문보고서 중 초안으로 작성된 챕터들의 검토와 승인, 이슈사항들에 대한 발전 방향 제시
- (추진경과) 2016년 6월 정례회의에서, 자문보고서를 “Financial Reporting for Heritage in the Public Sector”라 명하고, 무형 문화 유산자산에 대해 논의되었고, “유산자산 항목”의 설명에 대해서 토의를 함

〈주요 이슈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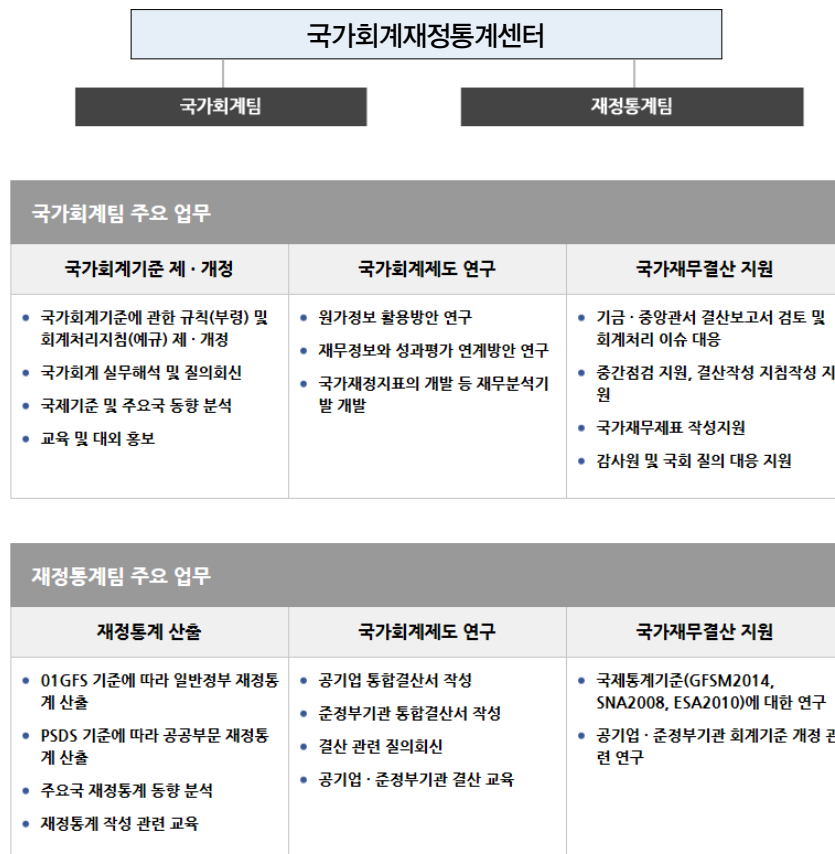
- (Chapter 1 초안 승인) “예외 기준”에 대한 검토와 Financial Reporting for Heritage in the Public Sector에 대한 개요 (introduction)의 초안
- (Chapter 2 초안 승인) '16년 6월 정례회의 이후 중요한 개정사항
 - 예비뷰(preliminary view) 1을 이끌어낸 새로운 구조
 - ‘유산자산 항목’의 정의에 대한 예비뷰 1의 초안 마련: 해당 자산의 희소성, 중요성 및 특별한 의미로 인해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해 영구적으로 보유, 보호되어야 할 자산으로 고고학적, 건축적, 농업적, 예술적, 문화적, 환경적, 역사적, 자연적, 과학적, 또는 기술적 중요성 등의 이유로 보유되거나 보존됨
- (Chapter 3 초안 승인) '16년 6월 정례회의 이후 중요한 개정사항
 - Chapter 3를 위한 개정된 구조 제시
 - 유산자산이 자산인지에 대한 대안 제시
 - 유산자산이 자산이라는 예비뷰 2의 초안 마련: 유산자산이 재무보고 목적상 자산일 수 있고, 개념체계에서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유산자산 항목은 재무보고 목적상 자산으로 고려되어야 함

- (Chapter 4 초안) 다음 사항에 대한 IPSASB의 동의 여부 및 범위와 구조에 대한 의견 수렴
 - 유산자산 인식을 논의하기 위한 cost-benefit의 강조
 - 유산자산 인식에 대한 대안적 접근법
- (Chapter 5 초안) 토픽의 선택과 정리방법을 검토하고, 대안적 회계 접근법에 대해 논의
 - 유산자산 보전과 관련된 부채의 인식에 대한 예비뷰 3: 회계실체는 유산자산 보전 활동을 수행하고 유산자산 항목의 보전으로 인해 도급업자, 종업원 등에게 그들이 제공한 보전용역에 대해 지급할 구속력 있고 불가피한 의무가 있는 경우, 그래서 동 회계실체가 자원의 유출을 피할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경우, 관련된 인식 가능한 부채를 가질 것임
- (Chapter 6 초안) 챕터의 구조와 범위, 챕터 초안에 포함될 기타 범위에 대한 논의

06 공지사항

1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2016년도 연구과제 수요조사

우리 센터에서는 2016년도 수행할 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과제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제안 받은 주제는 자체 심의를 통해 기획과제, 정부수탁과제, 위탁과제 등으로 선정하여 수행할 예정입니다. 과제 제안과 관련한 센터 팀별 주요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홈페이지(<http://gafsc.kipf.re.kr>) 의견제안 코너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뉴스레터 이용 안내

저희 센터에서는 2016년 상반기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뉴스레터를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개편하였고, 우편을 통해 정기적으로 뉴스레터 구독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① 국가회계 재정통계센터 홈페이지(<http://gafsc.kipf.re.kr>)에서 가입신청 또는 ② Tel. 044-414-2259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3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홈페이지 이용 안내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2016년 상반기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하여 국가회계의 기준과 관련 법령 및 센터에서 진행하는 정책연구 관련 정보를 제시하며, 국가회계 기준에 대한 단순질의에서 문서질 의까지 질의회신을 통해 신속하게 답변하고 있으니 평소 궁금했던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뉴스레터를 비롯하여 각종 발행물과 세미나자료, 연구보고자료 등 국가회계와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중이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편 집

정도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전체 총괄)

김은영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국가회계팀장(국가회계 총괄)

박윤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재정통계팀장(재정통계 총괄)

이정미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뉴스레터 편집 총괄)

■ 발행인 :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 발행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 044-414-2114(대표), <http://gafsc.kipf.re.kr>

